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42-2001-003555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-11 갤러리빌라 제지하2층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2	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-11 갤러리빌라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2-4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층 18.56㎡ 2층 140.41㎡ 3층 140.41㎡ 4층 140.41㎡ 지하1층 168.66㎡ 지하2층 158.97㎡ 옥탑층 12.16㎡	도로명주소 2018년12월7일 등기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-11		대	364㎡	2001년9월20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1년9월20일	제지하2층	철근콘크리트조 140.41㎡	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 소유권대지권		364분의 75.815	2001년9월20일 대지권 2001년9월20일
2				별도등기 있음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-11 갤러리빌라 제지하2층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			1토지(을구1번 근저당권설정등기) 2001년9월20일
3			2번의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말소 2001년9월25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2	소유권이전	2004년12월17일 제36881호	2004년12월10일 매매	소유자 미합중국인 안동민 590110-*****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30, 102동 501호(신공덕동,브라운스톤공덕아파트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9	전세권설정	2020년6월30일 제103568호	2020년6월30일 설정계약	전세금 금1,400,000,000원 범 위 제지하2층 전체 존속기간 2020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전세권자 정동윤 850303-*****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75, 113동 터103호(만리동2가,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)
9-1				9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20년6월30일 부기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2-2001-003555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99-11 갤러리빌라 제지하2층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안동민 (소유자)	590110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30, 102동 501호(신공덕동,브라운스톤공덕아파트)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9	전세권설정	2020년6월30일 제103568호	전세금 금1,400,000,000원 전세권자 정동윤	안동민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